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5
----------	----

2018년 9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18년 8월 16일
- 다. 회부일 : 2018년 8월 21일
- 라. 상정일 :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1) 제안이유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접 부지에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소방학교 직원 자녀(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2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아동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사무 내용(위탁 대상 사무, 범위 등)

1)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재산, 시설, 장비 등 위탁 재산관리
-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영유아 보호와 교육
-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 규 모 : 지상1층, 연면적 399.45㎡

○ 지원시설

- 개 원 일 : 2008. 5. 1.

- 근무인원 : 10명(원장 1, 정교사 6, 보조교사 2, 조리사 1)

- 모집정원 : 50명(6학급), 2018년 입소기준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19. 1.1 ~ 2023.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운영위탁 대상 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 단체 등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18년 소요예산 : 220,151천원(2018년)

- 인건비 : 170,238천원

▸ 급여 : 11,753,000원*12월=141,036천원

▸ 처우개선비 : 195,000원*12월=2,340천원

▸ 보험 : 2,238,533원*12월=26,862천원

- 관리운영비(전기, 가스비 등) : 27,113천원

▸ 전기요금 : 1,283,431원*12개월 = 15,401천원

▸ 도시가스 : 301,110원*12개월 = 3,613천원

▸ 건물관리비 : 674,917원*12개월 = 8,099천원

- 운영비 지원 : 22,800천원

▸ 보육교사 중식비 : 25,000원*6명*12개월 = 1,800천원

▸ 교재 교구비 : 500,000원*12개월 = 6,000천원

▸ 기능보강비(에어컨청소, 개보수비 등) = 15,000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심의대상 제외

자.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¹⁾에 따라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2008년 최초 위탁, 의회 미동의 사무)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2017.7)된 민간위탁 조례는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고,
 -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동 조례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 본 동의안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재개발원 어린이집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 규모 : 지상1층, 연면적 399.45㎡

○ 지원시설

- 개원일 : 2008. 5. 1.

- 근무인원 : 10명(원장 1, 정교사 6, 보조교사 2, 조리사 1)

- 모집정원 : 50명(6학급), 2018년 입소기준

구분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교실수	4	-	1	1	1	1
학급수	6	-	2	2	1	1
아동수	50	-	8	11	13	18
교사수	6	-	2	2	1	1

○ 위치도



○ 전경사진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9년 1월부터 5년²⁾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5년(2019.1.1 ~ 2023.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자격조건 : 「운영위탁 대상 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 단체 등
- 사 업 비³⁾: 220,151천원(2018년도 예산기준)
 - 인건비 : 170,238천원
 - 급여 : 11,753,000원*12월 = 141,036천원
 - 처우개선비 : 195,000원*12월 = 2,340천원
 - 보험 : 2,238,533원*12월 = 26,862천원
 - 관리운영비(전기, 가스비 등) : 27,113천원
 - 전기요금 : 1,283,431원*12개월 = 15,401천원
 - 도시가스 : 301,110원*12개월 = 3,613천원
 - 건물관리비 : 674,917원*12개월 = 8,099천원
 - 운영비 지원 : 22,800천원
 - 보육교사 종식비 : 25,000원*6명*12개월 = 1,800천원
 - 교재 교구비 : 500,000원*12개월 = 6,000천원
 - 기능보강비(에어컨청소, 개보수비 등) = 15,000천원
- 위·수탁 사무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재산, 시설, 장비 등 위탁 재산관리
 -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청결유지, 위생 감사 수감
 - 영유아 보호와 교육,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운영비 부담기준 :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1)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검토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소방학교 직원 자녀(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각 기관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으며,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방학교는 2018년 9월말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본 동의인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요건을 미 충족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겠음.
 - 이에 따라 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와 부지 교환을 협의중이기는 하나,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요건 충족을 위해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닌 경찰청 소속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수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계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소방학교
상시근로자수	553	125	68	285	75
여성근로자수	259	72	21	142	24
총근로자수	563	155	68	285	75

※ 인재개발원 근로자 수는 청소 공무원(9명), 위탁업체(구내식당7명, 어린이집10명), 전산유지보수(4명) 종사자를 제외한 수치이며, 현재 전산유지보수 직원(1명)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

2)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역으로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 부족 등의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왔으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직장어린이집 수탁 현황>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비 고
'08. 5. 1~'10. 12. 31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11. 1. 1~'13. 12. 31	함께하는 보육,	
'13. 12. 31	함께하는 보육 (포기서 제출)	
'14. 1. 2.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14. 2.1 ~ '18.12.31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19. 1. 1.~ '23.12.31	공개모집 예정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이며, 인재개발원은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 보다는 보육 및 육아교육에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만, 현재(2018년 7월기준) 직장어린이집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정원 50명에 현원은 48명으로 양호하나, 구체적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자녀수(9명)보다 서울연구원(13명)이나 지역주민(20명)의 자녀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예산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인재개발원직원 자녀수 9명(18.7%), 시직원(데이터센터포함) 자녀수 4명(8.3%), 서울연구원 소속 직원 자녀수 13명(27%), 지역주민 자녀수가 20명(41.6%)

-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하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으로 규정한 바,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제외한 현재 서울시 소속 직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은 26%로 법적 설치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부득이할 경우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재개발원이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모집정원(50명) 대비 현원(48명) 현황〉

2018년 7월말 기준

구 분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정원	현원										
교실수	4		-	-	1		1		1		1	
학급수	6	6	-	-	2		2		1		1	
아동수	50	48	-	-	8	8	11	11	13	13	18	16
교사수	6	6	-	-	2		2		1 (보육도우미1명)		1(보육도우미1명)	

〈직장어린이집 이용인원〉

2018. 7월말 기준

구 분	합계	전 체	만1세(새싹반)	만2세(꽃잎반)	만3(풀잎1반)	만4~5세(풀잎2반)
정 원	50명	50명	10(2학급)	14(2학급)	26(1학급)	
현 원	48명	48명	8	11	13	16 (4세/12명, 5세/4명)
직원 자녀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데이터센터 시 직원 구청 직원 28명	9명	1	1	2	5 (4세/4명, 5세/1명)
		13명	4	2	4	3 (4세/3명)
		1명				1 (4세/1명)
		3명		1	2	
		2명	1			1 (5세/1명)
지역 주민	지역자녀 20명	20명	2	7	5	6 (4세/4명, 5세/2명)
교사인원		8명	2명	2명	2명 (보육도우미 1명 포함) (보육도우미 1명 포함)	

- 또한, 동 법 제14조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는바,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한편,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들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이용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이를 위해 인재개발원은 보육수요가 있는 인력의 우선배치 등 서울시 직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지역 주민 자녀 입소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민간위탁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기간 검토

- 금번 어린이집 위탁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 24)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현재 당해 시설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시 소속직원 자녀의 직장 어린이집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서울시 예산으로 민간위탁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보육수요가 있는 서울시 직원의 인재개발원 전보 등 쟁점이 많은 현 시점에서 위탁기간을 5년(2019. 1.1. ~ 2023.12.31.)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7.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5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소방학교 직원 자녀(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중이며,

다.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2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아동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재산, 시설, 장비 등 위탁 재산관리
-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영유아 보호와 교육
-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 규모 : 지상1층, 연면적 399.45㎡
- 지원시설
 - 개원일 : 2008. 5. 1.
 - 근무인원 : 10명(원장 1, 정교사 6, 보조교사 2, 조리사 1)
 - 모집정원 : 50명(6학급), 2018년 입소기준

구 분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교실수	4	-	1	1	1	1
학급수	6	-	2	2	1	1
아동수	50	-	8	11	13	18
교사수	6	-	2	2	1	1

○ 위치도



- 1 배움관
- 2 창의관
- 3 다승관
- 4 쓱쓱어린이집
- 5 주차장
- 6 종합운동장
- 7 테니스장
- 8 서울연구원
- 9 데이터센터
- 10 소방학교
- 11 부대시설

- 전경사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19. 1.1 ~ 2023.12.31)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운영위탁 대상 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 단체 등

사. 소요예산 : 220,151천원(2018년)

○ 산출근거(인건비, 관리운영비,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170,238천원
 - ▶ 급여 : 11,753,000원*12월=141,036천원
 - ▶ 처우개선비 : 195,000원*12월=2,340천원
 - ▶ 보험 : 2,238,533원*12월=26,862천원
- 관리운영비(전기, 가스비 등) : 27,113천원
 - ▶ 전기요금 : 1,283,431원*12개월 = 15,401천원
 - ▶ 도시가스 : 301,110원*12개월 = 3,613천원
 - ▶ 건물관리비 : 674,917원*12개월 = 8,099천원
- 운영비 지원 : 22,800천원
 - ▶ 보육교사 중식비 : 25,000원*6명*12개월 = 1,800천원
 - ▶ 교재 교구비 : 500,000원*12개월 = 6,000천원
 - ▶ 기능 보강비(에어컨청소, 개보수비 등) = 15,000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심의대상 제외

자.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행정6급 남미라(☎ 02-3488-2032)